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혁신제품의 매출 행태를 보면 최초 매출은 혁신제품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나 지정 후 2년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행 3년인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혁신제품 지정연장 근거 및 총 연장기한 신설(안 제33조제3항)

현행 시행령은 혁신제품 지정기간만을 규정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,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반복적 연장 요구 방지를 위해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5. 31. ~ 6. 3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경우에는 해당”을 “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또는 제5항”을 “제5항 또는 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본문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(중전의 제12항) 중 “제11항”을 “제12항”으로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.	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④ (생략)	④ ----- -----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-----.
⑤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4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.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1. 2. (생략)	⑥ ----- ----- ----- ---- 제5항----- -----.
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	1. 2. (현행과 같음)
⑦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	⑦ 제5항 또는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⑧ ----- 제5항----- -----

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. 다만,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⑧ ~ ⑩ (생략)

⑪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제10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,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,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-----.

-----.

⑨ ~ ⑪ (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

⑫ -----

----- 제11항 -----

-----.

⑬ ----- 제12항 -----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231